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6. 23.(목)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정지숙 의원 외 6인
- 나. 발의일자 : 2011년 6월 3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9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6월 16일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생략)

### 가. 제안이유

- 2005년에 제정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충청북도 여성들의 발전에 기여하여왔으나, 저출산·고령화 현상, 일·가정 양립 환경의 변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조례명을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하여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성주류화 패러다임을 반영하게 함.
- 충척을 보장하여 조례의 지향점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변

경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간결하게 다듬고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 조례명의 변경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함.

### ○ 정의의 추가와 보완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살림.

### ○ 총칙의 보완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여 평등한 가족형성을 꾀하고, 제5조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의를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새롭게 정의하고, 또한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여성정책 기본조례로서 성격을 분명히 함.

### ○ 성인지예산 제도의 적용

성차별의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조문을 추가함.

### ○ 직제개편에 따른 여성정책 주관 부서 명칭의 변경

여성가족과 → 여성정책과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2005년 제정된 이래로 6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그 동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큰 폭의 개정없이 기본적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어 왔음.

이번 개정안은 2005년 이후 변화된 여성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성평등 이념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임.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명을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 적극적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등 여성정책관련 제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 구현을 위한 시책 강구,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시책 강구의 의무를 신설하여 충청북도 여성정책의 내용을 보강한 것임.

먼저, 제명의 변경을 보면, ‘발전론적 시각’에서 벗어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여성 대상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시책, 가족 관련 시책 등 주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충청북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을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1호와 같은 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여성관련법령”이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 4.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
- 6.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그 밖에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유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4. 제5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7조의 제목“(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를“(성인지적 분석·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의 수립·시행
- 나. 예산의 편성과 결산

제8조의 제목“(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을“(여성관련 실태조사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북한이탈여성, 결혼이민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원,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여성관련 시설·기관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시설과 여성정책 분석·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 각 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여성정책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제25조의 제목 “(구성 및 임기)”를 “(구성과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과 주무사무관”을 “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4조제7호 중 “요보호여성”을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여성발전을”을 “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 주무사무관”을 “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 <u>여성발전</u> 기본조례</p>	<p>충청북도 <u>여성정책</u> 기본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 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여성관련법령</u>”이란 <u>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u></p> <p>2.~3. (생략)</p> <p>4. “<u>소속기관</u>”이라 함은 「<u>지방자치법</u>」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p> <p>5.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 기본법</u>」과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현행과 같음)</p> <p>1. “<u>여성관련 법령</u>”이란 <u>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u></p> <p>2.~3. (현행과 같음)</p> <p>4. “<u>소속기관</u>”이란 「<u>지방자치법</u>」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p> <p>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3조(도의 책무) 도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5조(적극적 조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6.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p> <p>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도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유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5조(적극적 조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p> <p>가. 양성평등의 촉진</p> <p>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p> <p>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p> <p>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p> <p>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지원</p> <p>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p> <p>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p> <p>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지원</p> <p>마. 한 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p> <p>바.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p> <p>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p> <p>5. 여성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p> <p>② (생략)</p>	<p>제6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p> <p>가.~다. (삭제)</p> <p>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p> <p>가.~바. (삭제)</p> <p>4. 제5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p> <p>5.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p> <p>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성인지적 분석·평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③ (생략)</p> <p>제8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①~② (생략)</p> <p>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생략) ② <u>도지사는 저소득 모부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 ③ (생략)</p> <p>제17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lt;신 설&gt;</p>	<p>가. <u>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의 수립·시행</u></p> <p>나. <u>예산의 편성과 결산</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여성관련 실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현행과 같음) ② <u>도지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북한이탈여성, 결혼이민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 ① <u>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u> ② <u>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원,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p>
<p>제22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p> <p>①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2조(여성관련 시설·기관의 설치·운영)</p> <p>①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시설과 여성정책 분석·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한다.</p>	<p>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p>

현행	개정안
<p>1. <u>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2.~5. (생략) 6. <u>기타</u> 여성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제25조(구성 및 임기) ①~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여성가족과 주무사무관</u>이 된다.</p> <p>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생략) 7. <u>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u> 8. 기타 <u>여성발전을 위하여</u>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3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u>문화여성환경국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여성가족과 주무사무관</u>으로 한다. ② (생략)</p>	<p>1. <u>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2.~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여성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제25조(구성과 임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u>이 된다.</p> <p>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현행과 같음) 7. <u>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u> 8. 기타 <u>성평등과 여성권의 향상을 위하여</u>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3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u>문화여성환경국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u>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